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702
------	-----

2019. 6. 19.
기획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5월 2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0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】

-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6.1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
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)

1. 제안이유

가.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
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

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,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,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 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
(안 제12조제1항)

나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

(1)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
(안 제12조제2항제1호)

(2)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 및 확산(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(3)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(안 제12조제2항제4호)

(4)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
(안 제12조제2항제5호)

(5)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제6호)

다.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(안 제12조제3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과 지원방향을 공유하는 국제기구인 “좋은 일자리 협의체”의 구성과 협의체 사무국 설치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구축

- 서울시는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이후,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 전담부서를 출범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음.
- 이러한 서울시 차원의 혁신적인 노동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, 노동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ILO기준 등 국제사회의 가치 통합 실천을 위한 도시 간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7년 “제1회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포럼(이하 “포럼”)을 개최했음.
- 제1회 포럼에 참석한 도시들은 국제기구와 중앙정부의 협력, 고용안정,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대화 강화 등 8가지 조항이 담긴 “서울 선언”을 발표했으며, 2018년에는 “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”를 주제로 제2회 포럼¹⁾이 개최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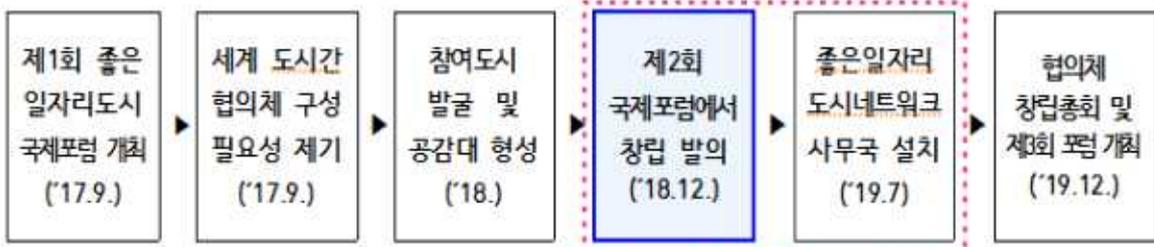
1) 20개 도시(해외13개, 국내7개), 17개 관련기관이 참여

- 특히 제2회 포럼 참석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도시 간 협력 구축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며, 폐회에 앞서 “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(이하 “도시협의체”)”의 창립을 발의하고 참여를 확정했음.
- 제3회 포럼은 2019년 12월 “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”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,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국내·외 40여개의 참석도시들과 함께, 도시협의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임.
- 도시협의체는 노동정책을 추진 중인 도시정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, 학계와 노동전문가의 우수노동정책을 분석한 후 도시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〈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(Decent Work Cities Network, DWCN)〉

○ 주요 역할 및 기능			
- ILO 좋은 일자리 기준에 부합하는 ‘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’ 개발			
- 도시정부간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			
- ‘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’ 정례화 및 분야별 집중 세미나 등 개최			
○ 회원도시 : 40개 도시(예정)			
- 2018년 제2회 국제포럼 참가도시 중 협의체 참여확정도시 16개			
미주(3)	뉴욕, LA, 호놀룰루	유럽(2)	빈, 밀라노
아시아태평양(7)	크라이스트처치, 타우랑가, 콜롬보, 자카르타, 방콕, 홍콩, 브리즈번		
대한민국(2)	서울시, 광주시	아프리카(2)	요하네스버그, 셰프샤우엔
- 국내·외 선진노동정책 추진도시 및 노동전문기관 참여 독려			

○ 설립과정



- 서울시는 도시협의체를 통해 국·내외 도시간 노동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, 포럼을 정례화할 계획임.
- 중앙정부 주도로 논의되었던 노동·일자리 정책을 도시정부 차원에서 상호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도시협의체의 조성은 필요하며, 향후 도시협의체와 포럼을 통해 노동분야에서의 도시 간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- 한편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외에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(GSEF), 세계스마트시티기구(WeGO) 등을 설립하고 의장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며, 모두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[참고자료1].

다.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(안 제12조제3항)

- 안 제12조제3항은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사무국은 포럼 및 도시협의체 참여 도시의 발굴과 가입 지원 등 네트

워크 관리, 노동모델 개발 연구과 사례 분석, 분과별/대륙별 심포지엄, 국제 포럼 등을 기획·운영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.

-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포럼의 초청도시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과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비용, 인건비 등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〈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사무국 관련 추가경정예산(안)〉

과목구분	산출내역 및 증감사유
사 무 관 리 비	○ 도시협의체 사무국 설치비용(사무집기 등) 20,000천원*1식 = 20,000천원
	○ 인건비 (7~12월, 2인) 25,000천원*1명 + 15,000원*1명 = 40,000천원
	증감사유
	○ 도시협의체 사무국(7월) 개소를 위한 사무집기(컴퓨터, 책상, 복합기 등) 비용 및 공사비용 ○ 인건비 2인 : (정) 25,000천원 (부) 15,000천원

- 서울시의 “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및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계획안”에 따르면, 사무국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고, 교내 100주년기념관에 설치·운영 후, 2021년 이후 독립 사무국으로 운영할 계획임.
-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부설기관은 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규정하고 있어, 신규 부설기관 설치 시 관련 조례의 개정이

필요한 바, 7월 개소를 목표로 하는 해당 계획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 입주할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 임대료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- 현재 100주년기념관 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교육관을 운영 중으로, 다 401호(158.17㎡)와 나 810~811호(49.50㎡) 등에 대한 사용료로 약 3천 3백만원을 납부한 바, 이에 준하여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,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,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,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
(안 제12조제1항)

나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

(1)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(안 제12조제2항제1호)

(2)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 및 확산(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- (3)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(안 제12조제2항제4호)
- (4)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제5호)
- (5)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제6호)

다.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(안 제12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3. 21. ~ 4. 10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)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축
2. 국제노동기구(ILO)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(이하 “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”이라 한다)의 개발 및 확산
3.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

4.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5.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(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)의 유치 및 지원
 6.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
 7. 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-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앞에 “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제13조 앞에 “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”를 삽입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12조(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)</u></p> <p><u>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축</u> <u>2. 국제노동기구(ILO)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(이하 “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”이라 한다)의 개발 및 확산</u> <u>3.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</u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20 1720 384 1760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83 1787 639 1827">제12조 ~ 제21조 (생략)</p>	<p data-bbox="839 315 1398 555">4. <u>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·운영</u></p> <p data-bbox="839 580 1398 954">5. <u>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(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)의 유치 및 지원</u></p> <p data-bbox="839 981 1398 1155">6. <u>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</u></p> <p data-bbox="839 1182 1398 1422">7. <u>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</u></p> <p data-bbox="839 1449 1398 1688">③ <u>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58 1715 1342 1756"><u>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</u></p> <p data-bbox="807 1783 1398 1890">제13조 ~ 제22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정례개최
-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주요개정 내용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(예상금액 연 4억 1천만원 수준)

가.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(안 제12조제2항제5호 관련)

- 임대료 : 무상 (서울시 산하기관 내 입주)
- 인건비(2인) : (정)50백만원 (부)30백만원
- 사무관리비(조사비 등) : 30백만원

나.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대륙별·사안별 세미나 개최 및 지원(안 제12조제2항 제6호 관련)

- 행사운영비 : 270백만원
- 사무관리비 : 30백만원

4. 작성자

-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김가영(2133-5527)